

의안 번호	2447	[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]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6. 30.(월)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6. 30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7. 16.(수)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교육국장 백영애)

가. 제안이유

- 위기가구 신고포상제 운영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포상금 지급 가능 복지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(현행)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
 - (변경)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
-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신고대상(안 제3조)
 -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위기가구 범위 규정
- 신고방법 및 결과통지 조항 신설(안 제4조)
 - 신고방법의 명확화 : 방문, 우편, 전화,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
 - 신고 처리결과 신고인 통지 : 전화나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
- 지급기준 및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, 별지 서식)
 -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복지 대상 선정 범위 확대
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→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 한부모가정

- 포상금 지급신청 절차 명확화
: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(별지 서식) 제출 및 포상금 지급기한(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) 규정

○ 포상금 지급 제외(안 제7조)

-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범위 명확화 및 지급제외 대상 정비

○ 환수 및 신고자 준수사항(안 제8조 ~ 제9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, 제13조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5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순정)

-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내의 위기가구 발굴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포상제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개정사항은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복지대상 선정 범위를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으로 확대하고, 위기가구 신고방법 및 처리결과 통지 조항 신설, 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임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제9조의2(위기가구의 발굴)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(이하 이 조에서 “위기가구”라 한다)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
2.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

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) ① 누구든지 출산, 양육, 실업, 노령, 장애, 질병,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.

②~③ (생략)

「사회보장기본법」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·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④ 삭제 <2024. 12. 20.>